2021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일 시	2021.11.25.(목) 14:00~15:15	장 소	대학본부 본관 3층 대회의실
참석자	[9명] 김삼수(의장), 권영찬(부의장), 서인덕, 이철희, 박추환, 김재홍, 최재목, 권기영, 강태욱		
불참자	[5명] 배창훈, 한기동, 김광영, 김민준, 석인주		
배석자	노상래(교무처장), 손판규(교무팀장), 황성수(대학원 부원장), 이승환(대학원행정실장)		
기록자	하종선(간사), 권오원		
안 건	1. <보고> 영남대학교 규정류 관리 기본 규정 개정 보고 2. <심의>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(안) 3. <심의> 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(안)		

1 회의요지(내용)

가. 개회

○ 의장: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고, 2021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안건을 부의하다.

나. 안건 1: <보고> 영남대학교 규정류 관리 기본 규정 개정 보고

○ 의장: 영남대학교 규정류 관리 기본 규정 개정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.

○ 간사: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, 2021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(2021.8.5.)에서 규정류 관리 기본 규정을 개정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고 하다. 이와 관련하여 규정 개정안이 기획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어, 규정 공포를 통하여 시행 예정이라고 하면서 규정 개정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다.

다. 안건 2: <심의>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○ 의장: <심의>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.

○ 교무처장: 교육과정 개편,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,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반영 등을 위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고, 개정 세부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.

○ 의원: 학칙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제30조의3(외국대학의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)에서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묻다.

○ 교무처장: 외국대학의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은 외국대학의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학칙에 해당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추가 설명하다.

간인(서명)	의장	김삼수	의원	권기영	의원	강태욱

○ 의원: 졸업학점이 변경됨에 따라 제33조(수강학점)에서 수강신청 기준학점이 조정되는 취지는 이해하고 있으나,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현행 19학점에서 27학점까지를 개정안 17학점이 아닌 18학점에서 27학점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.

○ 교무처장: 졸업학점 조정과 연계하여 교무처에서 다른 대학의 운영방식 및 학생들의 수강형태 등에 대하여 다양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다. 더불어 상정된 개정안이 학습권 및 수업 관련 운영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,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비교과 과정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이수 및 경험으로 학업 및 취업역량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하다.

○ 의원: 평의원이 제시한 수정 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나, 4년제 대학 교육과정·학업이수 관련 운영 형태 및 예상되는 대학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다.

○ 의원: 학칙 개정과 별도 사안이나 학생회에서 코로나-19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지역 타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추가로 수강학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교무처에 요청하였음에도 특별히 개선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하다.

○ 교무처장: 해당 사안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다.

○ 의장: 교무처는 학생들의 수업 및 학업이수와 관련된 작은 요청이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여 잘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다.

○ 의원: 제11조(편입학)제4항이 신설되면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편입학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, 학칙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4항에 해당되는 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.

○ 의원: 같은 조 제1항 현행 편입학 기준에서도 자격이 포함 되어있으므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.

○ 의장: 학칙 개정(안)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, 이견이 없으므로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(안)은 제11조(편입학)제4항에 대해서는 각 학년별 편입학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하며, 이를 위해 교무처에서는 평의원회의 지적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하고, 수정 내용을 회람한 후 이견이 없을 경우 원안을 일부 수정한 대로 심의·의결한다고 하다.

라. 안건 3: <심의> 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(안)

○ 의장: 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.

○ 대학원 부원장: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학과 폐지 등 대학원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.

○ 의원: 대학원 협동과정 두 개 학과의 폐지 사유와 재학생이 없는 지에 대하여 묻다.

○ 대학원 부원장: 해당 학과들은 충분한 신입생 모집이 곤란하여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정해진 학과간 협동과정 폐지 기준에 따라 신입생 모집 중지한 바 있으며, 2022.2.28.자로 폐지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, 현재 재적생은 없다고 하다.

○ 의장: 대학원학칙 개정(안)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, 이견이 없으므로 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(안)은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한다고 하다.

간인(서명)	의장	김삼수	의원	조재명	의원	강태국

마. 폐회

○ 의장: 호선에 의하여 간인(서명) 의원으로 의장, 권기영 평의원, 강태욱 평의원을 선출하다. 제3차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, 각 평의원에게 회의 종료에 앞서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.

○ 의장: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, 2021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의 폐회를 선언하다.

2 심의결정사항

가. 안건 1: <보고> 영남대학교 규정류 관리 기본 규정 개정 보고

• 영남대학교 규정류 관리 기본 규정 개정 보고 건 원안 접수

나. 안건 2: <심의>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• 영남대학교 학칙 개정(안)은 제11조(편입학)제4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,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하다.

개정(안) 원안	수정통과	비고
제11조(편입학) ④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, 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학년 또는 제4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. 다만, 제4학년 편입학의 경우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에 한한다.	제11조(편입학) ④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, 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2학년,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에 입학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. 1. 제2학년: 4년제 대학의 1학년과정 학점 이수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2. 제3학년: 4년제 대학의 2학년과정 학점 이수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3. 제4학년: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자	

다. 안건 3: 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(안)

• 영남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(안)은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하다.

간인(서명)	의장	김삼수	의원	권기영	의원	강태욱

2021.11.25.

평의원 확인	김삼수	권영찬	서인덕	이철희
	의 장	부의장		
	박추환	배창훈	김재홍	최재목
		불참		
	한기동	권기영	김광영	강태욱
	불참		불참	
	김민준	석인주		
	불참	불참		